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	<h1>보도자료</h1>	2016. 4. 4. (월)	
		작성	국정운영실 법무행정과 과장 전창현 / 서기관 이영일 (Tel. 044-200-2090)
		문의	법무부 외국인정책과 과장 김수남 / 사무관 최문정 (Tel. 02-2110-4112)
<p>* 엠바고 : 4.4(월) 회의종료(11:30) 이후 사용 / 말씀자료 별도배포 # 공동배포 : 법무부</p>			

'18년 까지 외국인 불법체류율 10% 미만으로 줄인다

- 총리주재 외국인정책위원회, 「2016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」 의결
- 중앙부처·지자체 협업으로 5대 부문 1,227개 외국인정책 과제 추진
- 불법체류자 단속은 강화, 이민자에 대해서는 안정적 정착 지원

□ 정부는 4월 4일(월)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18회 외국인정책위원회*를 개최하여 「안전한 국경관리와 이민자 사회통합 강화방안」 과 「2016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」 을 심의하였다.

* (참석) 국무총리(위원장), 정부위원 등 20명(교육·미래·외교·법무·행자·문체·농식품·산업·고용·여가·국토·해수부, 안전처, 방통위, 통계·경찰·중기청, 국조실), 민간위원 5명 등

- 외국인정책위원회는 '06년도에 설립된 총리 주재 위원회(재한 외국인처우기본법 제8조)로 외국인정책 기본·시행계획 수립, 외국인의 사회적응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·조정 한다.

안전한 국경관리와 이민자 사회통합 강화

□ 불법체류자 감소를 위해 3년 이내 외국인 불법체류율(불법체류자/총체류자)을 10% 미만으로 감축하는 목표를 설정하여, 불법체류자에 대한 상시 단속 체제를 강화한다.

* '15년도 11.3% → '16년도 10.7% → '17년도 10.0% → '18년도 9.3%

- 불법체류 위험성이 낮은 외국인을 선별하여 입국시키고, 고용허가제와 관련된 비자발급 시 검증을 강화하며, 도입인력 쿼터 배정 시 국가별 불법체류율을 반영할 예정이다.
- 그리고 불법체류 위험이 높은 환승객과 제주도 무비자 입국자 등에 대한 입국심사를 강화할 계획이다.
- 이민자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사회통합정책도 크게 바뀐다. 사회통합교육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등 내용을 강화하고 조기 적응프로그램의 이수대상을 점진적 확대하는 한편,
 - 동포포용 차원에서 재외동포(F-4)자격 부여 대상 및 활동범위를 노동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.

2016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

- 외국인정책기본계획('13~'17)에 근거하여 확정된 「2016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」에 따르면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협업으로 5대 부문 1,227개 과제를 추진한다.
- 먼저, 경제활성화 지원과 인재유치를 위한 정책들을 추진한다.
 - 자동출입국심사 활성화를 위해 이용 대상자를 국민은 14세에서 7세 이상으로 연령을 확대하고, 외국인의 경우 17세 이상 모든 등록 외국인으로 확대한다.
 - 단체관광객 유치 활성화를 위해 수수료 면제기간을 1년간 연장하고, 기존 고용허가제 외국인도 경력·기술 등 일정요건을 갖추면 장기취업이 가능하도록 하여 숙련기능인력으로 전환을 유도한다.

- 농번기 수요 집중 특성을 반영하여 90일 이내 단기간 근로 후 출국하는 농업분야 계절근로자제도 도입을 추진한다.
- 둘째, 대한민국의 공동가치가 존중되는 사회통합을 위해 국적 제도가 개선된다.
- 국민으로서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귀화허가 시 국민선서와 국적증서를 수여하고, 영주자격으로 국내에 일정기간 체류한 경우에만 일반귀화가 가능하도록 하는 영주자격 전치주의 도입을 추진한다.
- 셋째, 이민자 생활편의 지원 및 문화다양성 존중을 위한 제도를 확대 시행한다.
- 언어장벽·정보부족으로 법률서비스의 사각지대에 놓인 체류 외국인에게 모국어로 무료법률상담을 지원하는 '외국인을 위한 마을 변호사' 제도를 확대 시행한다.
 - 또한 다름을 존중하고 어울려 살 수 있도록 반편견 교육 등을 실시하는 다문화중점학교를 확대 운영하고, 사회 전반의 문화다양성 인식확산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·운영한다.
- 넷째, 국민과 외국인이 안전한 사회구현을 위해 국경관리 기능을 강화한다.
- 테러분자, 범죄자, 도난·분실여권 소지자 등 위험인물의 항공기 탑승을 방지하는 탑승자 사전확인제도를 확대시행하고,
 - 불법입국 위험인물 관리체제 및 환승 확인 시스템 구축을 통한 환승객의 국내 밀입국 시도를 차단한다.

- 마지막으로, 국제사회와의 공동발전을 위하여 난민의 국내 정착을 지원하고, 동포사회와의 교류·협력을 확대한다.
- 작년 최초로 수용한 '재정착난민'이 국내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정착단계별 3단계 맞춤형 프로그램(초기적응, 한국어집중교육, 취업 및 정착지원) 실시하고,
- 입양인의 뿌리찾기를 지원하기 위해 입양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모국방문과 한국문화 체험활동을 지원한다.

- ※ (붙임) 1. 외국인정책위원회 안건 요약
- 2. 주요안건 내용 상세자료
- 3. 주요 통계

I. [보고안건] 안전한 국경관리와 이민자 사회통합 강화 방안**1. 국경보안 및 체류관리 강화****① 현황 및 문제점**

- 최근 파리 및 벨기에 브뤼셀 공항 테러, 인천공항 등에서 발생한 외국인 불법입국 사건으로 국경관리에 대한 불안 증대
- 불법체류자 증가에 따른 체류질서 혼란, 불법체류자의 강력범죄 증가 등 각종 사회문제 발생

② 개선방안

- 국경 보안관리 강화
 - ‘탑승자 사전확인제도’ 확대시행, 지문 등을 활용한 출입국심사로 신원확인 강화
 - ‘불법입국 위험인물 관리체제’ 및 ‘환승 확인 시스템’ 구축을 통한 환승객의 국내 밀입국 시도 차단
- 불법체류자 관리목표 설정
 - 3년 이내 불법체류율 10% 미만 감축 목표
- 불법체류 방지를 위한 입국 관리 강화
 - 전담여행사가 통제하는 단체환승관광, 크루즈의 경우 불법체류자 발생이 적으므로 ‘제주 무사증 입국’에 전담여행사 모객 제도 도입*
 - * 전담여행사가 승객명단을 사전에 제출할 경우 입국신고서 생략 등 신속한 입국심사 혜택 부여
- 체류관리 강화
 - 고용부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, 고용허가제(E-9) 관련 자료를 공유하고, 송출국에 불법체류 방지대책 요구

- 동향조사요원으로 지정된 고용노동부 소속 공무원의 불법체류자 적발통보 활성화 추진
- 불법체류자 단속 강화 및 자진출국 적극 유도*
 - * 현행 불법체류 1년 미만 자진출국자에 대해서만 유예하고 있는 입국규제를 한시적으로 모든 자진출국자에게 확대('16.4.1.~9.30.)

○ **불법체류자 고용환경 억제**

- 농업분야 계절근로자 제도* 도입 타당성 검토 ('16년 상반기 4개 지자체, 149명 예정)
 - * '15.10월 계절근로자 제도를 시범운영, 19명 전원 출국
- 고용허가제 외국인도 일정요건을 갖추면 장기취업이 가능하도록 요건 완화 검토

2. 이민자와 동포의 사회통합을 위한 적극적인 이민정책 추진

① 현황 및 문제점

- 우리사회에 장기·영구적으로 정착하는 이민자가 증가함에 따라, 이민자 사회통합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가
- 재외동포(F-4)와 방문취업(H-2) 자격으로 체류하는 동포의 경우 도입제한 및 국내 활동범위에 차이가 있는 등 동포간 차별 발생

② 개선방안

- **이민자 사회통합정책 강화**
 - 귀화필기시험을 사회통합프로그램 종합평가로 일원화
 - 국민선서·국적증서 수여제도를 법제화하여 국민의 자부심 고취
- **이민배경 자녀의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**
 - 이민배경 자녀의 언어 및 학습지원 기관 확대 설치
 - 일반학생과 차별 방지를 위한 교육 강화

- 동포의 지역사회 내 통합 및 자녀의 적응지원
 - 동포의 지역사회 내 통합 및 주류사회 진입 지원
 - 동포 자녀의 학습지원 및 국제교류 사업 등 강화
- 동포에 대한 적극적 포용정책 실시
 - 재외동포(F-4) 자격 부여 대상 및 활동범위를 노동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점진적 확대

II. [심의안건] 2016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

1. 수립 배경

- 「제2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('13~'17)」에 따라 2016년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 수립 필요 (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)

< 제2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('13~'17) >

- ◆ 비전 : 세계인과 더불어 살아가는 활기찬 대한민국
- ◆ 정책목표
 - ① [개방] 경제활성화 지원과 인재유치, ② [통합] 대한민국의 공동가치가 존중되는 사회통합, ③ [인권] 차별방지와 문화다양성 존중, ④ [안전] 국민과 외국인이 안전한 사회구현, ⑤ [협력] 국제사회와의 공동발전

2. 과제 수 및 예산

- 과제 : 1,227개 (중앙부처 201개, 지자체 1,026개)
- 예산 : 6,758.06억원 (중앙부처 4,132.70억원, 지자체 2,625.36억원)
- * '15년 대비 과제 증가한 반면 예산 3.1% 감소(2015년 과제 1,173개, 예산 6,969.25억원)

정책목표	연도	2015년		2016년		전년대비 증감률(%)	
		과제	예산	과제	예산	과제	예산
합계		1,173	6,969.25	1,227	6,758.06	4.6 ↑	3.1 ↓
1. [개방]		147	3,502.78	137	3,079.82	7.2 ↓	13.7 ↓
2. [통합]		592	1,357.71	645	1,347.27	8.9 ↑	0.7 ↓
3. [인권]		326	633.42	343	665.21	5.2 ↑	5.0 ↑
4. [안전]		59	81.63	56	108.01	5.3 ↓	32.3 ↑
5. [협력]		49	1,393.71	46	1,557.75	6.5 ↓	11.8 ↑

3. '16년 주요 추진과제

① [개방] 경제활성화 지원과 인재유치 (137개 과제, 3,079.82억원)

○ 관광활성화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

- 단체비자 수수료 면제기간 연장('15년→'16년) 및 복수비자 발급대상 확대(60세→55세)
- 자동출입국심사 대상 확대(국민 이용대상자 연령 조건 하향 등)

○ 성장가능성 있는 이민자 유치기반 확충

- 국내 전문인력 부족분야의 신규인력 집중 유치('16년 100명 유치·활용)
- 유학 후 취업 및 영주자격 취득까지 쉽게 연결되는 학습·일 연계 비자 도입

② [통합] 대한민국의 공동가치가 존중되는 사회통합 (645개 과제, 1,347.27억원)

○ 국적 관련 제도개선 및 귀화신청자 자립능력 검증 강화

- 일반귀화의 경우 영주자격 전치주의 도입
- 일반귀화 신청요건 중 생계유지능력 요건 강화*

* 자산 3천만원 → 자산 6천만원 또는 전년도 1인당 국민소득(3,093만원) 이상 중 택일

○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 활성화 및 자녀의 건강한 성장 지원

-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체류·영주용, 귀화용*으로 구분

* 귀화용 사회통합프로그램의 경우 국민의 권리·의무 등 내용 20시간 추가

- 중도입국 청소년의 공교육 진입 유도, 조기적응을 위한 맞춤형 교육 강화(다문화 예비학교 확대 및 대안학교 등 운영)

③ [인권] 차별방지와 문화다양성 존중 (343개 과제, 665.21억원)

○ 이민자 차별방지 및 인권보호를 위한 법·제도 개선

- '외국인을 위한 마을변호사'를 확대하여 법률서비스 사각지대에 놓인 외국인에게 모국어로 무료법률상담을 지원

* ('15년) 수도권 10개 지역, 57명 위촉 시범실시 → ('16년) 법률상담 이용 사업지역 확대, 마을변호사 추가 위촉 예정

○ 국민과 이민자의 문화다양성 포용능력 증진

-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지자체 중심 세계인의 날 운영
- 국민의 문화다양성 감수성 향상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

④ [안전] 국민과 외국인이 안전한 사회 구현 (56개 과제, 108.01억원)

○ 안전한 국경관리 및 실효성 있는 체류자 관리

- 자동출입국심사 시 경찰청 보유 국민의 지문정보 활용
- 불법체류자 단속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전국에 5개 광역단속팀 구축 추진

○ 외국인 밀집지역·범죄 대응활동 강화

- 외국인 체류정보 등 조회를 위한 모바일 조회시스템 개발
- 외국인 범죄예방 및 범죄정보 수집을 위한 전담대응팀 운영

⑤ [협력] 국제사회와의 공동발전 (46개 과제, 1,557.75억원)

○ 난민신청자 등에 대한 정착 지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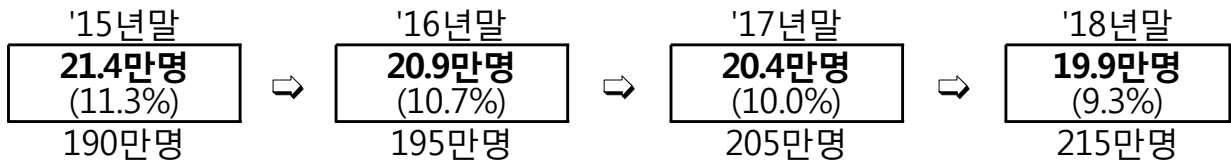
- '16년 하반기 재정착난민 도입(30명 이내, '16.10월) 및 기존 입국한 재정착난민(22명)에 대한 정착교육 프로그램 실시

○ 재외동포에 대한 국내정착 지원

- 고려인 동포 방문취업 인원 확대(10,000명→11,000명)
- 방문취업(H-2) 동포의 미성년 자녀가 성년이 된 경우에도 부모 동반 체류 허용

□ 불법체류자 감축

- (감축목표) '18년까지 연평균 5천명씩 감축, 불법체류자 20만명 미만, 불체율 10%미만 달성을 목표로 추진



- (감축방안)

- (고용허가제 관련) '15년 기준 고용허가제 입국 외국인의 불법체류율이 약 23%로 높은 점을 고려, 도입규모 결정에 불체율을 반영
- (환승객 관리) '제3국 여행 통과객 무비자 입국허가제도*'에서 불법체류율이 높은 비자 제외, 입국금지자 등 고위험 환승객에 대해서는 환승장까지 직접 인솔

* 무비자 입국이 허용되지 않는 국가 중에서 테러지원국가 등을 제외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선진 5개국(미국, 일본, 호주, 뉴질랜드, 캐나다) 비자를 소지하고 아래 요건을 갖춘 승객에게 30일의 범위 내에서 무비자 입국을 허용

- 우리나라를 경유하여 선진 5개국으로 가거나
- 선진 5개국에 체류 후 직항노선으로 우리나라를 경유하여 자국 또는 제3국으로 가는 승객

- (제주 무사증제도* 관련) 전담여행사(재외공관 지정)를 통해 사전 승객 명단을 제출한 경우 입국신고서 제출생략, 전용심사대 이용 등 신속한 입국심사 혜택 부여

* '02.5월부터 「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」에 따라 체류기간 30일의 무비자 제도 시행

- (자진출국제도 확대) 현행 불법체류 1년 미만 자진출국자에 대해서만 유예하고 있는 입국규제를 한시적으로 모든 자진출국자에게 확대('16.4.1~9.30.)

□ 이민자 조기적응프로그램

- (내용) 장기체류하고자 하는 외국인에게 입국초기 단계에서 필요한 사회적응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외국인이 우리사회에 성공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
 - ※ 공통과목(기초법·질서, 출입국·체류 제도, 사회 적응정보 등) 및 특수과목(부부교육-결혼이민자, 한국의 교육제도와 진로-중도입국자녀, 인권침해 예방-외국인연예인) 등으로 3시간 구성
- (대상) 외국인 유학생, 외국인 연예인, 밀집지역 외국인, 결혼이민자, 중도입국자녀, 외국국적동포 등 입국초기의 외국인
- (이수자 현황)

('15년 말 기준, 단위 : 명)

합 계	결혼이민	동포	유학생	연예인	밀집지역	중도입국
47,845	3,126	37,317	6,804	191	259	148

출처 : 법무부

□ 자동출입국심사 등록절차 간소화 및 활성화

- (설치현황) 현재까지 7개 공항만 총 106대 설치
 - ※ '15.12월 기준 연간 국민이용객은 1,243만여명으로, 일 평균 출입국자의 31.8%
- (이용대상) 14세 이상 국민*, 등록외국인 일부**
 - * 14세 이상 17세 미만 부모 동의 필요
 - ** 현재 이용 대상 등록외국인은 주재(D-7)·기업투자(D-8)·무역경영(D-9)·교수(E-1)·연구(E-3)·기술지도(E-4)·전문직업(E-5)·거주(F-2)자격 소지자와 그 동반가족, 재외동포(F-4), 영주(F-5), 결혼이민(F-6)자격 소지자
- (확대계획)
 - (국민) 이용대상자의 연령 조건 하향*, 경찰청 보유 지문정보를 활용, 자동출입국심사 사전등록 절차 생략
 - * 최소 연령을 현행 14세 이상에서 7세 이상으로 하향, 현행 14세 이상 17세 미만의 부모 동의절차 폐지
 - (등록외국인) 17세 이상 모든 등록외국인으로 대상 확대

□ 국민선서·국적증서 수여 법제화

- (배경) 현행 제도는 귀화자의 헌법가치 준수, 시민의식 제고, 국민으로서 자긍심 고취에 미흡
 - ※ 현재 귀화 신청 시 '서약서'를 제출하게 하고 있고, 독립유공자 후손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귀화허가 통지서만 우편으로 송부하는 실정
- (내용) 귀화·국적회복 시 국민선서를 효력발생 요건으로 개정하고, 현행 귀화허가 통지서 발부 대신 국적 증서 수여 법제화
 - ※ 미국, 독일, 캐나다, 이스라엘, 싱가포르, 호주 등은 충성선서를 귀화 요건으로 규정

□ 영주자격 전치주의

- (배경) 현행 귀화제도는 체류자격과 관계없이 국내에서 5년간 체류하면 귀화를 신청할 수 있어, 국민으로서 충분한 소양을 갖추지 못하고 귀화를 신청하는 경우가 발생
- (내용) 일반귀화(국적법 제5조)의 경우 귀화 전에 영주자격을 먼저 취득하도록 하되, 인도적인 차원에서 결혼이민자 등 간이귀화 등의 경우에는 현행과 같이 곧바로 국적취득 신청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

□ 외국인을 위한 마을변호사

- (배경) 언어장벽과 정보부족으로 법률서비스 사각지대에 놓인 외국인 대상 법률서비스 지원
- (내용) 법무부·행자부·대한변협이 공동으로 위촉한 마을변호사가 20개 언어로 통역을 지원*받아 체류자격 및 합법체류 여부를 불문, 모든 외국인을 대상으로 법률상담 지원
 - * '외국인종합안내센터(1345)'에서 통역지원
 - ※ '15년 57명 위촉, 수도권 10개 지역 시범실시
- (계획) 법률상담 이용 사업지역 확대, 마을변호사 추가 위촉

□ 탑승자 사전확인제도(i-PreChecking)

- ※ Immigration's Pre-Checking System

- (내용) 항공사와의 시스템 연계를 통해 출발지 공항 탑승권 발권 전에 탑승자의 인적사항을 항공사로부터 전송
- (시범운영 성과)
 - 시범운영 : 6개국 7개 공항('15. 2.~ '16. 3월 현재)
 - ※ 일본 나고야, 나리타 중국 상해·청도, 태국 방콕, 몽골 칭키스칸, 대만 타이완·가오슝·승산공항, 미국 LA
 - 결과 : 탑승금지 451건(입국금지자 48건, 무효·분실여권 403건)
- (시범실시 확대) 7개국 9개 공항

구 분	'16. 6월	'16. 9월	'16. 11월
공항명	호치민공항 (베트남, 주34편) 채랍콕공항 (홍콩, 주79편)	북경공항 (중국, 주68편) 심양공항 (중국, 주17편)	뉴욕공항 (미국, 주21편) 파리공항 (프랑스, 주12편) 프라하공항 (체코, 주4편)

□ 재정착난민제도

- (내용) 해외 난민캠프 등에 있는 난민중 유엔난민기구의 추천을 받아 면접 등 심사절차를 거쳐 한국에 영구적으로 정착시키는 제도
 - ※ '15. 4. 3. 제16회 외국인정책위원회에서 재정착난민 수용이 확정(「난민법」제24조)
- (추진경과) '15. 12. 23. 미얀마 난민(카렌족) 22명을 수용(총 4가족)
 - ※ 재정착난민 수용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역할 분담과 인권국가로서 위상 제고에 기여, 재정착난민 중 특히 아동은 통합 및 정착에 긍정적 효과 기대
- (향후 계획) '16년 상반기 대상자 선발 실시(30명 이내) 및 재정착 난민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통합 프로그램 운영

참고 3

주요 통계

- (체류외국인 현황) 2015.12. 기준 체류외국인은 1,899,519명으로 2015.12. 기준 주민등록인구(51,529,338명) 대비 약 3.7%에 해당
 - ※ ('07) 107만명 → ('09) 117만명 → ('11) 140만명 → ('13) 158만명 → ('15) 190만명
- (체류자격별 현황) 취업자격 625,129명(전문분야 48,607명, 단순분야 576,522명), 재외동포 328,187명, 결혼이민 151,608명 등

(2015.12.31. 현재, 단위 : 명)

체류 자격	계	비전문 취업 (E-9)	방문 취업 (H-2)	재외 동포 (F-4)	영주 (F-5)	유학 (D-2)	거주 (F-2)	기타
인원	1,899,519	276,042	285,342	328,187	123,255	66,334	38,881	781,478
비율	100%	14.5%	15.0%	17.3%	6.5%	3.5%	2.0%	41.1%

- (불법체류자) 불법체류자는 214천여명, 총 체류자대비 불법체류율 11.3%
- (난민) 1994.~2015.12.까지 난민인정 576명, 인도적 체류 910명 등 1,486명에게 국내체류 허용
- (국적취득자) 2015년 총 귀화 및 국적회복자는 13,534명
 - ※ 정부수립 이후 총 귀화 및 국적회복자는 200,850명임
- (외래관광객) 2015년 총 외래관광객은 13,231,651명이며, 2014년 외래관광객 14,201,516명 대비 6.8% 감소 (한국관광공사)
- (외국인 투자액) 2015년 총 외국인 직접투자신고액 209.1억 US달러 유치(출처 : 산업부), 투자이민제 투자액 1,445억 원 유치(법무부)
 - ※ 2010.~2015. 투자이민제 총 누계액 1조926억 원